제96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(우주항공청)	1.발사면허 취소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(신설) ○ 발사면허 취소의 근거를 신설하면서, 그 요건으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, ②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중앙행정기관장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, ③발사시설의 안전관리에 긴급·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, ④면허를 받은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 – 또한, 우주항공청장이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2호·제3호를 제외하고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 ○ 발사체로 인한 우주사고 발생시 발사면허를 받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(제14조) ▶우주개발 진흥법 제13조의2,제14조	1.비중요
2	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, 행위준칙(신설) ○ (지정기준)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①상설 조직 및 상근직 전문인력, ②시스템 및 시스템보안대책, ③조직·인력·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규정, ④관련 업무실적 보유 등 4가지 요건 모두 충족	1.중요 2.비중요 3.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취소기준) ▲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, ▲전담기관업무 수행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산업부장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▲전담기관이 지정받은 핵심자원이 고시에서 제외되는 경우, ▲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지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 ○ (행위준칙) 업무 수행의 공정성,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▶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7조,제8조,제9조 2.공급기관 등의 공급망 점검 · 분석 등 의무(신설) ○ 공급기관은 자체전담반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급망 점검 ·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 – 점검 · 분석 결과에는 실시개요, 세부 수행방법, 점검 · 분석의 내용, 필요한 시정 · 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등 포함 – 공급기관에 점검 · 분석 결과에 대한 시정 · 보완 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정 · 보완 계획 제출 – 산업부는 시정 · 보완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가능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핵심자원 개발 · 구매 · 조달 등에 관한 권고를 받은 공급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계획 보고 – 산업부는 권고사항 이행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가능 ○ 산업부는 자원안보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훈련 대상 공급기관을 상대로 사전교육 실시 가능 – 훈련 대상 공급기관은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결과 제출 ○ 산업부는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, 비축자원 방출 · 사용조치, 핵심자원의 할당 · 배급,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,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▶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2조,제14조,제33조,제34조,제35조,제37조,제38조 3.비상동원광산의 지정, 지정취소 및 관리 기준(신설) ○ (지정기준) 핵심자원의 위치 · 매장량 · 생산량 · 품질이 확인되며 이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광산과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비상동원광산으로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지정 가능 ㅇ (운영 · 관리기준)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· 가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광산 · 시설 · 안전 관계법령 준수 필요 ㅇ (지정취소) 비상동원광산 운영 · 관리기준의 미준수, 비상동원광산에서 생산 · 가공되는 자원의 핵심자원 제외 등이 지정취소 사유 ㅇ (채굴명령의 실효성 확보) 채굴명령의 실효성, 이행여부,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▶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0조,제21조,제22조,제36조 4.핵심공급 · 수요기관 지정 및 관리(신설) ㅇ (지정기준) 핵심자원의 대체가능성, 국내 매장량 및 생산규모, 해당 기관의 수급 현황 · 전망 등을 핵심공급 · 수요기관 지정기준으로 설정 ㅇ (실효성 확보) 핵심자원 수급차질, 국내외 가격 급변 등에 대한 핵심공급 · 수요기관의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서류제출 요청 가능 ▶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9조,제30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핵심공급기관의 매뉴얼 작성(신설) ㅇ 핵심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, 자원안보위기 유형별·단계별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-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부합하도록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필요 - 자원안보위기 대응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필요 ▶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
4	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지역별, 연도별 비율(신설) ㅇ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(자가발전설비 등) 의무설치 비율 규정 - (지역별 비율) 수도권은 100% 비율 적용, 비수도권은 0% 적용하여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에서 제외 - (연도별 비율) 해당사업의 시설 설치 전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년도(2024년) 2%에서 2040년 20%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▶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, 별표 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분산에너지설비 설치계획 및 확인 절차(신설) ㅇ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 기준 및 의무설치자의 이의신청 절차, 의무설치자의 이행실태 파악 및 설치 확인 신청 절차 등 마련 ▶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,제9조,제12조,제14조,제15조,제16조	
5	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(신설) ㅇ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, 수행실적 보유, 조직·인력·재정능력, 보안관리 계획 등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▶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
6	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기준 강화(강화) ㅇ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 산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않도록 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허용하도록 설치조건을 강화 ▶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강화(강화) ○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 결과,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진입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,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허용 ▶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3.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강화(강화) ○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지전용허가 제한(별표 4 제1호 다목) – 산사태 저감 대책* 수립했거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가능 *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▶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4.토석채취허가시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기준 강화(강화) ○ 토석채취지역 내 토사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 추가(제3호 마목)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성토 시 비탈면 기울기는 1:1 이하(45°)로 하고, 재해방지 대책 수립 ㅇ 소음 · 진동 · 먼지 최소화를 위한 피해저감계획 수립 (제3호 바목) – 주민의견 반영, 환경영향평가 거친 경우 면제 ▶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	
7	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(신설) ㅇ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내용 구체화 ▶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,제12조 2.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(신설) ㅇ 현장실습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▶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치과기공소·안경업소의 개설등록·양수 시 제출서류 추가(신설) ㅇ 면허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하여 치과기공소·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제출하도록 함 ▶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,제13조, 제16조	
8	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 환수 규정(강화) ㅇ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기준 강화 –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,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3배로 부당이득 환수 금액 규정 – 기타 사항(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 · 중재를 받은 경우,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)에 대하여 기존 「약사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바와 동일하게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을 환수 ▶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(신설) ㅇ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집단보육실을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 *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·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의무 및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, 및 기준 위반시 시설개선 명령, 신축시 확인검사 의무 등 적용 ▶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	1.비중요